2022년도 제3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Ⅰ. 회의 개요

o 일　　시: 2022. 3. 28.(월요일), 10:30

o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o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5명 참석

- 심의위원: 백대용(분과위원장), 박재화, 오영주, 이성엽, 송수현 위원

o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2-26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강나래 전문위원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4.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Ⅱ.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645건(안건번호 제2022-13690호~14334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2-13690호~13698호(순번 1번~9번)는 ▽▽▽ 블로그에서 불법 복제된 방송물을 제공 중인 사안으로,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여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안건번호 제2022-13699호~13712호(순번 10~23번)는 웹사이트에서 불법 복제된 출판물 등을 제공 중인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1,595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o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 주요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미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한 해

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 6개의 대체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URL 정보 총 842개의 URL 정보에 관한 '구글' 검색결과 제한 협조 요청 여부(안건번호 제2022-8765호~9606호)

- 회의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차단 조치한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대체사이트 6개에 접속할 수 있는 842개의 URL 정보에 관해 검색결과 제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o 백대용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 제3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2-26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백대용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강나래 전문위원: 제1호 안건 회의록과 관련하여 민원 관련 부분,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저작권자, 저작물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 대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참석 위원 전원: 의견 없음.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통과시키도록 하겠음.

3. 안건상정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강나래 전문위원: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른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제2022-34회 시정권고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람.

- 강나래 전문위원: 이번 심의안건은 일반인이나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발견한 불법복제물에 대하여 보호원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시정을 권고하기 위하여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 등 26개 온라인서비스의 이용자들이 게시한 1,642건의 복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해당 이용자들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에 관한 심의임. 관련 법령 및 심의 기준은 모두 검토 보고서의 3쪽 이하 내용으로 대신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번 내지 9번은 ▽▽▽ 블로그에 게시되어 있는 일본 방송 불법복제물 총 28건임. 민원인이 신고한 것으로, 일부는 심의일 기준 게시자에 의하여 비공개 처리된 사실이 확인됨.

비공개 게시물의 경우 이웃공개, 서로이웃공개 등의 형태로 지속적으로 제공되고 있을 것이 예상되고, 게시물이 삭제·전송 중단된 경우와 달리 심의대상 게시물이 계속하여 존재하고 있는 점, 언제든지 전체 공개 전환이 예상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체공개 게시물과 동일하게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따라서 순번 1번 내지 9번 모두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여 시정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건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순번 1번 내지 9번, ▽▽▽ 블로그에 게시된 영상 불법복제물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구함.

- 참석 위원 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이견 없음.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 내지 9번에 대하여 시정권고를 가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순번 10번~23번은 민원인이 신고한 불법복제 게시물임. 총 19건이고, 순번 10번 내지 21번은 출판물을, 순번 22번은 게임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불법으로 복제하여 제공 중인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먼저 순번 10번은 만화 '●●● ●●●● ●●●●'라는 제목의 게시물로, 일본 출판 만화의 불법 번역본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23번은 커뮤니티 사이트 '△△△'에 게시된 출판물의 불법복제물임. 앞선 웹하드 사안과는 다르게 판매 중인 사안은 아니나 합법 시장에서 판매 중인 출판물을 무단으로 공중의 자유로운 이용에 제공 중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사실은 분명한 것으로 보임.

종합하면, 순번 10번부터 23번까지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합법 시장에서 제공 중인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 중인 바, 저작물의 시장 및 가치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는 점을 고려하여 모두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건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순번 10번 내지 23번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주시기 바람.

- A 위원: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는 의견과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의 차이는 무엇인지?

- 강나래 전문위원: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시정권고 판단의 중요한 기준 중 하나임. 이에 우리 심의위원회는 판단 및 표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이에 시장 대체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 '상당하다'는 표현을, 상당한 정도에는

미치지 아니하나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있는 사안인 경우 '작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표현으로 구분하고 있음. 대체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 일반적임.

- A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합법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시정권고하여야 한다는 검토 내용에 동의함. 가결 의견임.

- B 위원: 이견 없음. 가결 의견임.

- C, D, E 위원: 동의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0번 내지 23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다음은 순번 24번부터 645번까지 총 1,595건의 모니터링 안건임. 심의대상 게시물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음악, SW, 게임, 출판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369번은 웹하드에서 제공 중인 방송물 '닥터 브레인'임. 해당 저작물은 애플TV에서 2021년 11월에 방영한 웹툰 원작의 한국 드라마임. 6회 분량 전체 제공 중인 사실을 확인하였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469번은 웹하드에서

제공 중인 음악저작물임. 해당 음악저작물을 비롯하여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사이트의 2022년 3월 16일자 100위 차트의 곡을 전부 제공하고 있음. 다운로드하여 재생이 가능한 것까지 확인하였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636번은 웹하드에서 제공 중인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임. 합법 시장에서 1년에 약 60만원의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저작물을 220포인트에 판매 중임. 크랙 포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보아,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시킨 프로그램으로 보임. 다운로드 후 실행이 되는 사실까지 전부 확인하였음.

해당 3건을 포함하여 총 1,595개의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으로 복제한 영화, 방송, 음악, SW, 게임, 출판, 만화 등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가결 의견임.

- 백대용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하시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해당 안건은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음악, SW, 게임, 출판,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모두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24번~645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

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2-13690호~13712호(순번 1번~23번)에 대하여는 가결, 그 외(안건번호 제2022-13713~14334호(순번 24번~645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o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제2호 안건에 관한 회의록 9쪽부터 12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2-8765호~9606호(순번 1~842번)의 구글 검색결과 제한을 가결함"

4. 폐회 선언

o 백대용 분과위원장이 제3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2년 제3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 4. 4.

분과위원장 백대용

위원 박재화

위원 오영주

위원 이성엽

위원 송수현